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 운용 방향

머리말

폐기물 재활용은 제도적인 지원에 의해 수요가 창출되는 특성을 갖는다. 새로운 폐기물 관리제도인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는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폐기물을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존의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생산자의 재활용책임이 보다 강화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때문에 사회적으로 재활용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한양대학교 금속공학과 석사
- McGill University 금속공학과 석사
- Ecole Polytechnique 금속공학과 박사
- 한국자원연구소 자원활용소재연구부 선임연구원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폐기물 전공 겸임교수

1. 생산자책임제활용의 개념

생산자책임제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이하 EPR)제도란 소비 단계 이후의 제품, 즉 소비자가 소비한 이후에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도 생산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책임이란 법적, 경제적, 물리적 책임 등을 다 포함하는데 이는 현행 우리나라 예치금제도에서 생산자는 명목상의 경제적 부담 외엔 사실상 폐기물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혹은 질 수 없다는 것과 주요한 차이를 가진다. 이런 견지에서 생산자로 하여금 재활용의 직접 참여 동기를 부여한다는 예치금제도의 원래 취지를 확대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생산자가 재활용책임을 맡는 대신에 재활용비용에 대한 권한을 인정받으므로 현재 비용만을 부담하고 실질적으로 비용에 대한 권한이 없어 재활용에 직접 참여 할 수 없는 예치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치금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폐기물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인 폐기물의 최소화를 위한 예방적 관점에서, 그리고 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여 전체 재활용을 안정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EPR은 현재 재활용체제의 대안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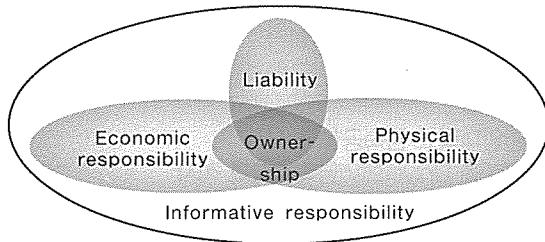
EPR에 의한 폐기물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기존 폐기물 관리체계 하에서 관계 맺고 있는 많은 관리 주체들의 관계가 변화된다. 즉 EPR을 적용할 경우에는 소비재의 제조자 및 유통자, 소비자 그리고 정부 간의 전통적인 책무 균형을 변화시킨다. 특히 제품 소비 이후의 책무 관계에 있어서 그러하다. EPR 프로그램들은 과거에 생산자 및 유통자에게 부여된 책임을 확대시켜 소비 이후의 단계에서의 제품관리책임(재정적, 물리적 또는 둘 다)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자로 하여금 재질의 선택, 생산공정, 포장 그리고 마케팅 전략에 관한 의사 결정을 재평가하도록 하여 처음부터 생산자들이 제품의 소비 이후 단계에 대한 책임의 비용을 줄이도록 촉진한다.

2. 생산자의 책임 범위

생산자에게 부여되는 책임을 분석해 볼 때 여러 가지 종류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이 책임은 그림 1에서 나타내듯이 의무(Liability), 경제적 책임, 물리적 책임, 소유권(Ownership) 그리고 정보적 책임(Informative responsibility)으로 구별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책임의 구별은 EPR 전략을 이해하고 비교하는 데 용이하며, 특히 생산자의 정확한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하다.

(그림 1)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를 위한 모델



2.1 의무

문제가 되는 제품에 의해서 야기되는 환경 피해를 증명할 책임을 말한다. 의무의 범위는 법률에 의해서 결정되며, 제품의 전과정의 다른 부분인 사용과 최종처리를 포함할 수도 있다.

2.2 경제적 책임

생산자가 제조된 제품의 수집, 재활용 및 최종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책임을 말한다. 이 비용은 생산자에 의해서 또는 특별한 경비(special fee)에 의해 직접 지불될 수 있다.

2.3 물리적 책임

이 책임은 제조자가 제품이나 제품의 효과에 대한 실제적인 물리적 관리에 포함되는 체계를 특징짓는 데 사용된다.

2.4 소유권

제조자는 제품의 전과정을 통한 제품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는 제품의 환경적 영향과 연결되어 있다.

2.5 정보적 책임

생산자는 제조한 제품에 대한 환경적 성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말하며, 이로써 제품에 대한 책임을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진다.

3. 생산자책임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선진국에 훨씬 못 미치지만,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은 독일과 영국 등의 선진국 수준인 1.05kg/인으로서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폐기물 감량화이며, 폐기물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급 위주 자원정책을 수요관리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일 이 시급하다. 수요관리 위주의 정책에서 핵심은 자연자원의 이용자에게 자연자원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는 소위 사용자부담원칙(UPP)을 철저히 지켜 나가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 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활용 제도 및 체계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치금제도와 재활용 체계에 대한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EPR제도의 도입이 거론되었다.

3.1 폐기물예치금제도의 보완 필요성

폐기물예치금제도는 사용 후 회수,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폐기물의 회수, 처리비용을 예치도록 하고 회수, 처리 실적에 따라 예치비용을 반환해 주는 제도이다.

표 1과 그림 2는 최근 몇 년간의 예치금 부과 및 반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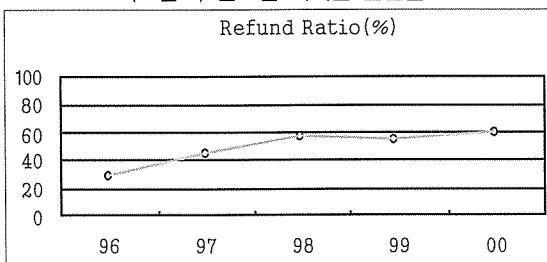
〈표 1〉 폐기물예치금 부과 및 반환 현황(연도별)

(단위 : 백만원, %)

구분	'96	'97	'98	'99	2000
부과액	34,016	53,564(10.675)	53,164(13,084)	37,248(7,985)	45,027(12,772)
반환액	9,970	24,221	30,439	20,748	26,968
반환율	29.3	45.4	57.3	55.7	59.9

* ()은 사업자단체면제액임

(그림 2) 연도별 예치금 반환율



표와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매년 반환율이 증가하고 있고, '98년도에 들어서 반환율이 50%를 넘어섰으나, 최근 3년간 큰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60% 이하를 밑돌고 있다.

현재 반환실적이 60%를 밑도는 저조한 실적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다. 실제로 회수율 100%를 기준으로 예치 요율을 설정하고 있으나 소비자 배출에서부터 재활용처리업체까지의 연계가 부족하고, 딱히 이렇다 할 회수 유인이 없으며, 또한 수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실적으로 회수율 100%는 달성하기 힘들다는 견해가 있다.

더군다나 예치금 수준이 낮아 생산자가 재활용을 해야 하는 유인이 적고, 실제로 생산자가 재활용을 하고 싶어도 재활용제품시장의 인프라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반환율이 높게 나타나는 전지류와 윤활유의 비용현실화율은 회수처리비용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종이팩이나 가전제품 등은 비용현실화율이 각

각 7.47%, 26.62%를 나타내고 있다.

표 2는 특정 품목에 대한 예치금 부과 및 반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전지, 금속캔, 윤활유 및 유리병은 예치금 반환율이 비교적 높으나, 종이팩이나 전자제품은 반환율이 10% 정도로 매우 낮다.

2000년도 예치금 부과액(품목별출고량×예치금)은 45,027백만 원으로 사업자단체감면액 12,772백만 원을 제외한 32,255백만 원을 부과하여 30,823백만 원(95.6%)을 징수하였으며 품목별로는 PET병(10,815백만 원), 금속캔(10,263백만 원) 두 품목이 부과액의 47%이다.

반환액은 26,968백만 원, 부과액 대비 59.9%로 전년도 반환율 55.7%보다 약간 증가하였으며 품목별로는 전지(197→265%), 금속캔(86.0→94%)이 급격히 증가하고 타이어(79→46%), PET병(60→46%), 유리병(85→77%)은 감소하였다.

3.2 생산자의 역할 증대 필요성

재활용비용의 사회적 분담과 재활용산업의 수요기반 구축에 있어서 정부와 소비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점차 생산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가지고 있다. 생산자는 재생원료의 수요자인 동시에 원천적 공급자이기 때문이다. 상품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이기는 하지만 현대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는 생산자가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소비자의 상품 선호를 선도하기 때문에 상품의 재질과 기능,

〈표 2〉 폐기물예치금 부과·납부 및 반환 현황(2000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PET병	전지	타이어	윤활유	전자제품
A 부과액	45,027	1,609	10,263	4,719	10,815	392	3,087	5,785	8,357
B 감면액	12,772	-	6,750	754	-	-	1,305	3,963	-
C 실부과액	32,255	1,609	3,513	3,965	10,815	392	1,782	1,822	8,357
D 납부액 (납부율)	30,823 (95.6)	1,615 (100.4)	3,632 (91.6)	3,632 (91.6)	10,124 (93.6)	392 (100)	1,782 (100)	1,769 (97.1)	8,357 (100)
E 실반환액 (실반환율)	14,196 (44.0)	162 (10)	2,896 (83.4)	2,896 (73)	5,861 (54.2)	1,037 (264.8)	120 (6.7)	279 (15.3)	911 (10.9)
F 반환액 (반환율)	26,968 (59.9)	162 (10)	9,680 (94.3)	3,650 (77.3)	5,861 (54.2)	1,037 (264.8)	1,425 (46.2)	4,242 (73.3)	911 (10.9)

자료 : 환경백서, 2001

비고 : 1. 부과액(A) = 실부과액(C) + 감면액(B), 반환액(F) = 실반환액(E).

납부율 = 납부액(D)/실부과액(C), 실반환율=실반환액(E)/실부과액(C).

반환율=반환액(F)/부과액(A)

2. 김면액은 사업자단체에 대해 전년도 회수, 처리실적만큼 예치금부과를 면제해주는 제도로서, 타이어, 윤활유, 금속캔, 유리병에 대해 한정

디자인 등 특성을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생산자의 전략과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또 재활용산업의 원료가 되는 재활용폐기물은 원천적으로 생산자에 의해 공급된다. 생산자가 제품의 특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재활용 가능성의 정도가 달라지고 재활용비용에 차등이 생긴다. 생산자가 상품 개발에 있어서 재질의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여 소재를 선택하거나 회수 선별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특성과 디자인을 설계한다면 재활용산업의 비용이 훨씬 절감될 수 있으며, 이는 신규원료에 대한 재생원료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시켜 수요 증대에도 기여하게 된다.

흔히 폐기물 발생의 궁극적 원인자는 생산자 또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생산자 및 기업이 폐기물 수거·운반·처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OECD가 제시한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은 원래 환경관리의 효율(즉,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 환경개선 효과 달성)을 유도하기 위한 원칙이었다. 따라서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얹매이기보다는 누구에게 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해서 책임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되도록이면 폐기물의 배출량을 최소로 줄이고, 일단 발생한 폐기물은 효율적으로 수거·운반·처리함으로써 폐기물 때문에 국민 전체가 치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폐기물 수거·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크기는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하느냐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질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TV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폐기물로 내다 버릴 때 현재는 각 가정이 이 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데, 오히려 가전제품 회사로 하여금 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총비용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각 가전제품 회사는 전국적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 판매망을 역으로 이용하면 폐품이 된 가전제품을 손쉽게 수거하고 운반할 수 있을 것이며, 일단 수거된 폐품을 어떻게 재활용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

은지도 해당 가전제품 회사가 가장 잘 알 것이다. 또한 가전제품 회사에게 폐기물 수거·운반·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면, 제품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부품을 재활용하기 용이하게 만들고, 폐품이 된 다음에도 수거·운반·처리하기 좋게 만들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의 내구성도 높일지도 모른다.

4. EPR의 운용 방향

물론 EPR제도에 대해서는 기업 쪽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다.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가전제품에 대하여 EPR이 적용될 경우 기존의 가전제품 재이용시스템이 붕괴되어 재이용률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긴요한 것은 EPR제도의 실시로 절감되는 폐기물 수거·운반·처리비용 부분을 생산자 및 기업 쪽에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 제도의 실시로 국가 전체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비용이 400억 원 절감되었다고 하면 이 중 일부를 생산자에게 돌리거나 혹은 기존 가전제품 재이용시스템의 활성화에 재투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EPR제도를 모든 폐기물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생산자가 수거 및 처리를 책임지는 것이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수거 및 처리를 책임지는 것보다 더 경제적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폐기물들을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런 폐기물에 EPR제도를 적용해야 수거 및 처리비용의 절감분 일부를 생산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게 되며, 이와 같이 생산자에게 충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어야 EPR제도를 정착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EPR제도는 생산자에게도 이익이 되고 일반 시민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운용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EPR제도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 이므로 EPR제도는 앞으로 대세가 되리라는 것이다. 이 제도가 국내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지지도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5. 변형된 개념 : 공유생산책임(Shared Product Responsibility: SPR)

생산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개념에 대하여 협의로 상품의 종말(End of Life)단계에 대한 책임에 한정하려는 움직임과 광의로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 및 폐기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점차 전자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초기에는 EPR이 의제로 대두되었으나 생산자 측의 반대의견으로 공유책임제도(Shared Product Responsibility: SPR, 이하 SPR)의 방향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자책임의 확대란 모든 책임을 정부에서 생산자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책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소비자나 정부와 함께 생산자의 책임도 늘리는 것이 EPR제도의 기본이기 때문에 사실상 명칭만 바뀌는 것이며 그 내용은 변화가 없다.

결국 SPR 개념의 도입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 제도는 생산자와 소비자, 정부 등 모든 사회구성원 간 공유책임의 개념으로부터 공유책임의 주체를 생산자 그룹 내로 한정하여 상품의 생산 사슬에 연관된 모든 주체가 공동으로 생산자의 책임을 분담하는 의미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

폐기물 문제에 대한 사회의 공동 책임은 사실상 모든 폐기물 문제 논의의 전제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특히 기업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SPR제도로의 이행은 정당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국내의 사정을 살펴보면 폐기물재활용에 관한 한 이미 SPR제도가 정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소비자의 역할이 정착되어 있다. 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분리수거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가 이 제도의 시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폐기물재활용에 있어 우리나라 소비자가 담당하는 역할은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민간 수집상이 수집하지 않는 재활용폐기물을 수거하여 재활용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선별된 폐기물은 유상으로 공급하고는 있지만 그 대가는 지자체가 지출하는 비용의 일부에 그치

고 있어 정부(지자체)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여러 지자체에서 재활용폐기물의 수거를 기피하고자하거나 공급가액을 올리고자 하는 경향에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없이는 정부의 역할 감소가 예상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분리배출체계가 정착,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 수집은 지자체 수집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지자체로 하여금 분리 수집의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재활용비용 중에서 수집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SPR제도의 원칙에 맞지 않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청소 예산 절감을 목표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집을 민영화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바, 수집비용의 지방정부 부담 몫의 감소가 불가피한 현실이다.

따라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지자체 수집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의 수집비용을 생산자가 분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자체와 생산자 간의 비용 분담은 생산자와 지자체 간의 계약을 근거로 지자체가 분리 수집된 폐기물을 유상으로 공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유상 조건의 획일적 결정은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와 생산자의 사적 계약에 일임할 수밖에 없으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만 일임하면 불평등 협약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지자체는 원하는 비용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집비용이 수입보다 많을 경우 분리 수집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대하여도 분리 회수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지자체의 수집 의무화 및 유상 공급에 대하여 사업자단체 및 생산자 측에서는 여러 이견이 있다. 우선 EPR의 원칙상 지자체에 수집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공유책임의 원칙을 생각할 때 지방 정부가 일정의 비용부담을 하는 것은 크게 원칙을 벗어나는 일이 아니고 현행 지자체의 수집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비용 절감에도 기여한다. 다만 수집 의무가 지자체에 부과되는 경우 폐기물에 대한 소유권이 지자체에 귀속되는 결과 지자체가 수집한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 국내 재활용 사업자가 원료 난으로 애를 먹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수출 자체도 일종의 폐기물 처리이므로 이를 억

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다만 국내 재활용사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족이 예상되는 폐기물을 수집, 비축하여 부족 시 공급할 수 있는 비축 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현재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이 기능을 확대할 계획에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6. EPR의 적용품목 기준

EPR제도의 대두를 계기로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생산자 책임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모든 폐기물을 다 EPR제도로 관리할 수는 없다. 생산자에 의한 EPR제도의 적용이 용이한 폐기물 종류들이 있다. 폐기물 관리법의 분류 방식에 의하면, 폐기물의 분류는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눈다.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생활계 폐기물, 배출시설계 폐기물, 건설계 폐기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폐기물로 세분한다. 이들 폐기물 중에서 EPR제도의 적용 대상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계 폐기물이다. 두 폐기물은 최종 소비 제품을 소비자가 용도 폐기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성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다른 점은 배출원의 특성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의 규모가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즉, 전자는 1일 평균 폐기물 발생량이 300kg 이하로서 가정에서 배출하며, 후자는 그 이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학교, 군부대, 상가, 빌딩 등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것이다.

EPR제도에 관한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법률적 용어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생활계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한다. 동시에 생활폐기물은 ‘가정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생활폐기물’로 사용함으로써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표현코자 한다.

이러한 용어 정의에 의하면, EPR제도의 적용 대상 폐기물은 생활계폐기물에 한정된다. 하지만 모든 생활계폐기물이 다 EPR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 중에서도 재활용가능 폐자원만이 EPR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이와 같이 EPR제도의 적용품목이 생활계폐기물 중 재활용가능 폐자원으로 한정되는 이유는 이들

품목들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생산자가 재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재활용이 용이치 않은 처분성(소각, 매립) 폐기물에 대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EPR제도의 도입은 재활용 가능 폐자원은 생산자가, 재활용가능 폐자원 이외의 품목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는 역할분담의 구조가 성립하는 계기가 된다.

EPR제도의 대상 품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생활계폐기물의 EPR제도 적용 가능성 여부

		종 류	EPR 적용
일회성폐기물		과자봉투, 비닐봉지, 스티로폼 용기 등 일회용품	곤란
소비성 재활용 기능 폐자원	종이류	신문지, 종이컵, 팩,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상자류	적합
	캔류(철, 알루 미늄기타)	동조림캔, 음료수캔, 분유통, 맥주캔, 부탄캔, 실충제용기	적합
	병류	술병, 음료수병, 화장품병, 드링크병	적합
	플라스틱류	샴푸통, 세제용기, 향지박, 비거지, 요구르트병, 음료수병(PET)	적합
	고철류(철류, 비철금속)	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남비류, 양은류, 스텐류, 알루미늄શ시, 전선	곤란
	내구성재활용가능 폐자원 품목	내구성(대형폐기물)재활용가능 폐자원 - 폐 가전제품, 폐 가구, 자동차, 컴퓨터	적합
	기타 처리곤란품목	형광등, 건전지, 면도날, 화장품용기, 약품용 기, 유해화학물질(방향제, 슬기 제거제 등)	적합 (곤란)
의류	-	-	곤란
	연티제	-	-
음식물쓰레기		가정 -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집단급식소 - 회사, 학교, 관공서 식당 식품접객업소 - 일반상업식당, 관공 호텔 숙박시설 대규모점포 - 백화점, 도매 센터, 농수산 도매 센터	-

‘적합’ 품목들은 두 가지 요건 중 적어도 하나를 만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들이다. 이들 제품들은 대개 제품의 유통 경로와 폐기물 배출 경로가 단순하고 뚜렷하여 생산자에 의한 회수가 용이하다. 둘은 현재에는 재활용의 수익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폐기물이 환경에 매우 유해하기 때문에 제조자에 의해 안전하게 회수, 처리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제품군이다. 기타 처리 곤란 품목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현재 여기에 해당되어 EPR제도의 관리대상이 된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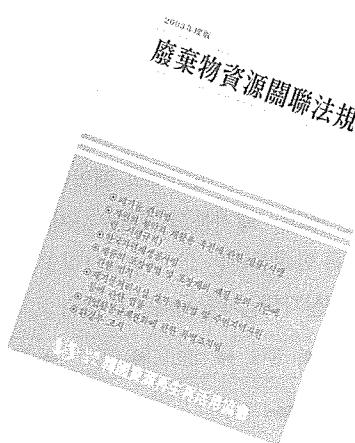
표적인 품목은 평형광등이다. 폐형광등의 회수 및 처리를 위한 자율협약이 2000년 11월 6일에 체결됨에 따라서 2001년부터 폐형광등을 EPR제도에 의해서 회수,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폐형광등은 현재의 재활용기술과 수거체계 등의 여건 하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는 품목이다. 그래서 이 품목에 대한 EPR제도 적용의 정당성은 재활용에 따른 경제성에 기초하기보다는 유해물질의 안전한 회수 및 처리에 의한 외부 편익의 보전이라는 관점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예컨대 국내 도입의 경우처럼 EPR을 '생산자책임재활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여타 품목과는 달리, 엄격히 말하자면 '생산자책임처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안전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외부편익을 보상해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EPR제도의 적용이 가능한 품목들이라고 해서 해당 품목이 모두 국민경제 차원에서 경제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각 품목별로 분리 배출, 수집 운반, 선

별 및 재생의 과정에서 재활용 여건이 얼마나 구비되어 있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며, 따라서 EPR제도를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별로 정책 변수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EPR은 폐기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생산자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나 정부와 함께 생산자의 책임도 늘리는 것이므로, 생산자에게는 정부나 소비자가 여건 상 하기 어려운 역할을 부여하고 나머지 경제주체들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EPR제도의 성공은 국민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재활용을 해야 한다는 인식, 폐기물은 자원이라는 인식, 그리고 정책적 지원에 의해 시장이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EPR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재활용 관계법규 판매 안내 (긴급) 폐기물 자원 관련 법규

- 수록내용 : 폐기물관리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한국자원재생공사법 /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법칙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업 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환경부고시
- 규격 : 4×6배판
- 발행 일 : 2003년 7월
- 판매금액 : 12,000원 (※정가 20,000원)
- 판매방법 : 온라인입금 확인 후 우송
 - 하나은행 : 254-910003-09705
 - 예금주 : (사)한국자원재생재활용협회
- 판매처 : (사)한국자원재생재활용협회
TEL : 02-3665-2450~1, FAX : 02-3665-2431